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건설현장 화물차주를 「산업안전보건법」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」이 개정됨에 따라 건설현장 화물차주의 범위를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과 동일하게 살수차, 카고크레인 및 고소작업자동차 운전자로 구체화하는 한편,

늘찬배달원이 「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」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 그 교육시간을 산업안전보건법상 최초 노무제공 시 안전보건교육 시간으로 인정하여 중복 교육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6. 7. 6. ~ 8. 18.)

3) 행정규제 :

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장제3절에 제9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4조의2(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) 영 제67조제13의4호에서 “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”이란 「자동차등록규칙」 별표 1 제2호에 따른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말한다.

1.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살수차류
2.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굴절식 및 직진식 카고크레인류
3.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중 고소작업자동차류

별표 4 제3호 비고 중 “영 제67조제13호라목”을 “영 제67조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「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」 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 교육을 받은 경우 또는 영 제67조제13호라목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4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94조의2(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) 영 제67조제13의4호에서 “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”이란 「자동차등록규칙」 별표 1 제2호에 따른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말한다.</u> <u>1.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살수차류</u> <u>2.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굴절식 및 직진식 카고크레인 류</u> <u>3.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중 고소작업자동차류</u>